

남동구가족센터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023 사업연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남동구가족센터

목 차

	페이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첨부)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5
· 운 영 성 과 표	6
· 주 석	7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6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남동구가족센터
운영위원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남동구가족센터(이하 "시설"이라 함)의 시설회계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시설의 재무제표는 시설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시설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시설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시설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시설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시설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기타사항

남동구가족센터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3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우찬



2024년 8월 3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시설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남동구가족센터

2023 사업연도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 사업연도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시설이 작성한 것입니다."

남동구가족센터 센터장 박동규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 1층

(전 화) 032-467-3904

재 무 상 태 표

2023 사업연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2022 사업연도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남동구가족센터

(단위 : 원)

과 목	2023 사업연도(당기) 공익목적사업		2022 사업연도(전기) 공익목적사업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 산				
I. 유동자산		719,858,815		285,567,079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719,858,815		285,567,079	
II. 비유동자산		135,378,334		140,038,334
(1)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주석4)		7,378,334		12,038,334
차량운반구	23,300,000		23,3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921,666)		(11,261,666)	
(3) 무형자산		-		-
(4) 기타비유동자산		128,000,000		128,000,000
보증금	128,000,000		128,000,000	
자 산 총 계		855,237,149		425,605,413
부 채				
I. 유동부채		528,900,838		167,494,847
미지급금	517,700,838		151,494,847	
예수보증금	11,200,000		16,000,000	
II. 비유동부채		-		-
부 채 총 계		528,900,838		167,494,847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주석5)		-		-
II. 보통순자산(주석5)		326,336,311		258,110,566
잉여금	326,336,311		258,110,566	
적립금	-		-	
III. 순자산조정(주석5)		-		-
순 자 산 총 계		326,336,311		258,110,566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855,237,149		425,605,41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2023 사업연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 사업연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남동구가족센터

(단위 : 원)

과 목	2023 사업연도(당기) 공익목적사업		2022 사업연도(전기) 공익목적사업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I. 사업수익		5,844,207,016		5,692,944,269
기부금수익	83,324,300		116,003,710	
보조금수익	3,023,496,587		3,552,486,448	
이용료수익	2,731,186,129		2,018,454,111	
타회계전입금	6,200,000		6,000,000	
II. 사업비용(주석6)		5,776,272,757		5,721,391,871
(1) 사업수행비용	5,776,272,757		5,721,391,871	
사무비	1,347,778,131		1,163,154,895	
재산조성비	7,577,700		26,329,140	
목적사업비	4,420,916,926		4,531,907,836	
(2) 일반관리비용	-		-	
(3) 모금비용	-		-	
III. 사업이익(손실)		67,934,259		(28,447,602)
IV. 사업외수익		1,145,886		7,662,870
이자수익	115,575		86,985	
기타사업외수익	1,030,311		7,575,885	
V. 사업외비용		854,400		435,880
기타사업외비용	854,400		435,880	
V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68,225,745		(21,220,612)
VII. 법인세비용(주석7)		-		-
VIII. 당기운영이익(손실)		68,225,745		(21,220,61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2023 사업연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2022 사업연도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남동구가족센터

1. 시설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남동구가족센터(이하 "시설"이라 함)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위기 가족의 기능, 정서 등 가족문제를 지원하고, 보편 타당한 가족 문화의 확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2. 유의적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공익법인회계기준"이라 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나. 재무제표의 작성단위

시설은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이하 "조합"이라 함)의 부설기관으로 조합의 회계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바, 당 시설은 조합의 특별회계인 시설을 작성단위로 하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공익목적사업 외에 기타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합 재무제표와 공익목적사업부문 재무제표는 동일합니다. 당 시설의 재무제표는 당 시설을 제외한 조합과 관련된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외화환산

시설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시설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시설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합니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바.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추정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무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추정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비금융자산의 손상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별도의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이 인식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시설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 종업원급여

시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당해 회계기간 중에 시설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의 과목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 수익인식

시설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1) 최초측정

시설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같이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

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시설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시설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2) 후속측정

시설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의 후속측정은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파. 순자산

시설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은 순자산조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은 보통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 법인세비용

시설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시설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구분	예입처	당기	전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신한은행 외	719,858,815	285,567,079

4.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지출 포함)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차량운반구	12,038,334	-	-	4,660,000	7,378,334

(2) 전기("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지출 포함)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차량운반구	16,698,334	-	-	4,660,000	12,038,334

5. 순자산의 변동

당기와 전기("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중 시설의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	-	279,331,178	-
당기운영이익(손실)	-	-	(21,220,612)	-
기타순자산조정	-	-	-	-
전기말	-	-	258,110,566	-
당기초	-	-	258,110,566	-
당기운영이익(손실)	-	-	68,225,745	-
기타순자산조정	-	-	-	-
당기말	-	-	326,336,311	-

6.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4,420,916,926	1,178,074,080	10,276,664	167,005,087	5,776,272,757
사업수행비용	4,420,916,926	1,178,074,080	10,276,664	167,005,087	5,776,272,757
일반관리비용	-	-	-	-	-
모금비용	-	-	-	-	-
기타사업비용	-	-	-	-	-
합계	4,420,916,926	1,178,074,080	10,276,664	167,005,087	5,776,272,757

(2) 전기("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4,531,907,836	1,053,713,555	28,467,120	107,303,360	5,721,391,871
사업수행비용	4,531,907,836	1,053,713,555	28,467,120	107,303,360	5,721,391,871
일반관리비용	-	-	-	-	-
모금비용	-	-	-	-	-
기타사업비용	-	-	-	-	-
합계	4,531,907,836	1,053,713,555	28,467,120	107,303,360	5,721,391,871

7. 법인세비용

시설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당기 및 전기 법정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은 각각 9.9% 및 11%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기 및 전기에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남동구가족센터 통합서비스사업 외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남동구가족센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¹⁾

인원수 및 시간 ⁵⁾	감사 참여자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²⁾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 ³⁾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⁴⁾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⁶⁾		1	-	-	-	-	-	-	-	-	-	1	-
투입 시간 ⁷⁾	분·반기 검토	-	-	-	-	-	-	-	-	-	-	-	-
	감사	48	-	-	-	-	-	-	-	-	-	48	-
	합계	48	-	-	-	-	-	-	-	-	-	48	-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 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인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 ¹⁾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 ²⁾ : 2024. 8. 8.(1일) - 주요 내용: 고유위험 평가와 이에 따른 전반감사계획 수립		
현장감사 주요 내용 ³⁾	수행 시기 ²⁾	투입 인원 ⁴⁾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2024. 8. 30. (1 일)	상 주 (1)명, 비상주 ()명	기말감사
	. . .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 . .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 ²⁾ : - 현장조사(참관) 장소 ⁵⁾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 ²⁾ : - 현장조사(참관) 장소 ⁵⁾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 ⁶⁾ (X), 채권채무조회 ⁶⁾ (-), 변호사조회 ⁶⁾ (-) 그 밖의 조회 ⁷⁾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 ⁸⁾	- 횟수: (1)회 - 수행 시기: 2024. 8. 30.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 ⁹⁾ : “해당사항 없음” - 수행시기: ~ (일)		

-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 로 적습니다.
-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 ¹⁾	일자	참석자 ²⁾	방식 ³⁾	주요 논의 내용
1	2024. 8. 30.	시설 담당자, 회계법인 담당이사	서면회의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부정 관련 경영진의 책임,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 등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23년											차기 이월분 (D= A+B-C)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 고	지 방	자 기	국 고	지 방	자 기	국 고	지 방	자 기	국 고		지 방
붙임자료 참고																	

주: '국고' 는 국고보조금을, '지방' 은 지방보조금을 '자기' 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23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해당사항	없음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6382	직위	이사	성명	제귀영
연락처	032-623-5800, 010-9662-0606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부처/ 자치 단체	세부사업명	수행 기간	예산액	2023년												차기 이월분 (D=A+B-C)	
				전기 이월분 (A)			증가(减)			발생이자			감소(C)				잔액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합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1인가구지원사업	2023	66,000,000	-	66,000,000	-	-	15,617	-	-	55,862,810	-	-	10,152,807	-		
	가족희망드림사업	2023	168,750,000	-	168,750,000	-	21,445	-	-	165,614,260	-	-	-	3,157,185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2023	24,500,000	-	24,500,000	-	4,667	-	-	24,500,000	-	-	-	4,667	-		
	결혼이민자 일자리 전담인력 운영 사업비	2023	43,500,000	-	43,500,000	-	6,274	-	-	40,865,070	-	-	-	2,641,204	-		
	공동육아나눔터	2023	165,582,000	-	165,582,000	-	913	-	-	157,260,480	-	-	8,322,433	-	-		
	다문화가정의 날 사업	2023	20,000,000	-	20,000,000	-	926	-	-	20,000,000	-	-	-	926	-		
	다문화가족 자녀멘토링 사업	2023	10,440,000	-	10,440,000	-	3,800	-	-	7,710,990	-	-	-	2,732,810	-		
	다다음사업	2023	5,940,000	-	5,940,000	-	596	-	-	5,940,000	-	-	596	-	-		
	별달장애인정밀검사 및 치료지원사업	2023	4,800,000	-	4,800,000	-	3,260	-	-	2,800,000	-	-	2,003,260	-	-		
	사회포용안전행사업	2023	46,700,000	-	46,700,000	-	6,841	-	-	35,447,770	-	-	11,259,071	-	-		
	세계인의 날 사업	2023	1,200,000	-	1,200,000	-	31	-	-	1,200,000	-	-	-	31	-		
	아이돌보미 장려수당 사업	2023	50,040,000	-	50,040,000	-	13,578	-	-	50,040,000	-	-	-	13,578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023	1,773,686,000	-	1,773,686,000	-	158,537	-	-	1,448,907,885	-	-	324,936,652	-	-		
	온라인교육 플랫폼구축 사업	2023	15,180,000	-	15,180,000	-	3,373	-	-	13,317,000	-	-	-	1,866,373	-		
	위기가족치료사업	2023	4,000,000	-	4,000,000	-	1,268	-	-	4,000,000	-	-	-	1,268	-		
	일자리지원사업(다문화강사파견)	2023	4,000,000	-	4,000,000	-	-	-	-	4,000,000	-	-	-	-	-		
	일자리지원사업(로봇물서비스)	2023	30,000,000	-	30,000,000	-	-	-	-	30,000,000	-	-	-	-	-		
	일자리지원사업(취업연계교육훈련)	2023	24,700,000	-	24,700,000	-	10,983	-	-	24,700,000	-	-	-	10,983	-		
	중사자 건강검진(건강가정)	2023	2,800,000	-	2,800,000	-	554	-	-	2,200,000	-	-	-	600,554	-		
	중사자 건강검진(다문화)	2023	1,800,000	-	1,800,000	-	466	-	-	1,200,000	-	-	-	600,466	-		
	중사자 금량비(건강가정)	2023	12,000,000	-	12,000,000	-	1,000	-	-	10,431,350	-	-	-	1,569,650	-		
	중사자 금량비(다문화)	2023	8,400,000	-	8,400,000	-	783	-	-	7,233,550	-	-	-	1,167,233	-		
	중사자 복지점수(건강가정)	2023	5,200,000	-	5,200,000	-	683	-	-	4,450,000	-	-	-	750,683	-		
	중사자 복지점수(다문화)	2023	2,850,000	-	2,850,000	-	250	-	-	2,600,000	-	-	-	250,250	-		
	중사자 임금보전비(건강가정)	2023	33,446,000	-	33,446,000	-	4,600	-	-	24,761,660	-	-	-	8,688,940	-		
	중사자 임금보전비(다문화)	2023	19,802,000	-	19,802,000	-	3,299	-	-	17,946,650	-	-	-	1,858,649	-		
	지역특화사업	2023	16,000,000	-	16,000,000	-	4,778	-	-	16,000,000	-	-	-	4,778	-		
	통합사업 (건강가정다문화 센터운영사업비)	2023	462,320,000	-	462,320,000	-	58,376	-	-	432,676,870	-	-	29,701,506	-	-		
	특성화사업	2023	437,342,000	-	437,342,000	-	75,245	-	-	346,047,560	-	-	91,369,685	-	-		
	특성화추가지원사업	2023	27,792,000	-	27,792,000	-	6,029	-	-	21,493,390	-	-	-	6,304,639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2023	47,280,000	-	47,280,000	-	9,470	-	-	39,561,360	-	-	7,728,110	-	-		
	한부모시설 돌봄서비스지원사업	2023	729,000	-	729,000	-	426	-	-	727,932	-	-	1,494	-	-		
	행복프로그램	2023	4,000,000	-	4,000,000	-	357	-	-	4,000,000	-	-	357	-	-		
	합계		3,540,779,000	-	3,132,829,000	-	336,516	-	81,909	2,656,684,117	-	473,319,547	44,381,291	-	-		